❽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1918년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 850면 / 08.10-19 조53조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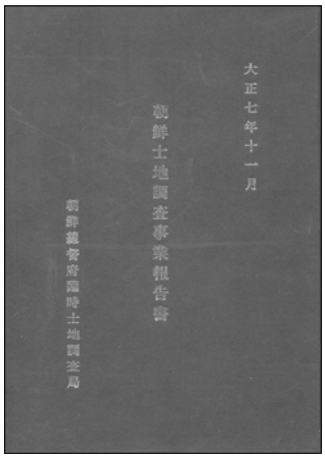

일제는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제점령하자 1910년~1918년까지 약 9년에 걸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이 조사를 위해 조선총독부에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3,000명의 직원을 두었다. 이 조사에는 총 2,000여만 엔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1918년에 출간된 이 보고서는 총 850면에 달하는 방대한 것이다. 더욱이 앞서 기술한 「朝鮮地誌資料(조선지지자료)」 438면을 합치면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보고서는 실로 1,288면에 달한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우리보다 15년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만에서 1898년~1904년까지 6년에 걸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들은 대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실시했다. 더욱이 일제는 대만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지휘하던 目賀田太郎(매가다 다로) 등 전문가들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경작지 및 택지, 조사지역 내의 산림이었다. 조사 내용은 소유권조사와 측량, 지가조사(地價調査)와 최초로 1 : 50,000의 지형도(지도) 제작이었다.

그러면 일제는 왜 토지조사사업이 필요했던 것일까? 일제는 한말(韓末)의 토지제도 문란 등을 그 필요성으로 들고 있으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농지세(農地稅)가 필요했던 것이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합병해 놓고 보니 세원(稅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근대적인 산업도, 기업도 없었으므로 세금을 부과할 곳이 없었다. 주세(酒

稅)나 담배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는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총독부 직원의 인건비에도 태부족한 상황이었다. 궁리한 끝에 토지에 대한 과세밖에 방도가 없어 농지와 대지에 대한 이른바 토지세를 징수하려고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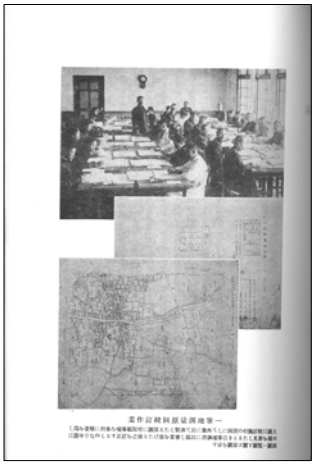

당시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임야가 대부분 문중 소유였고 논밭은 집안에서 알아서 대대로 분할경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유주가 밝혀지지 않고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방법이 없었다.

토지조사 결과 경작지 비율이 전 국토의 19.4%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1920년부터 농지세가 부과되자 소작료는 두 배로 뛰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5%가 지주였고 95%는 소작인이었다. 소작료 인상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은 궁핍해졌다. 왕조시대부터 만성적인 춘궁기가 있기는 했지만 보릿고개가 심화된 것은 이때부터라 할 수 있다. 농촌에서 생활수단을 잃은 수십만의 청년들은 만주, 일본 등지로 퍼져 헐값의 노동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